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56 발의연월일: 2022. 11. 21.

발 의 자: 박수영·조경태·정운천

김희곤 • 전봉민 • 김성원

백종헌 · 김기현 · 홍정민

김미애 · 양금희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 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며,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 해소, 시장원리에 기반한 분산에너지 제도 수립, 분산에너지 기반조성 등 분산에너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확산을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지원을 포함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 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를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 징금을 부과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전망 접속지연, 출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함(안 제24조).

-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 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 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 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산업 부에서 직접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 차.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에너지를 말한다.
-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업
 -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사업 중 분산형전원, 전기 저장장치 등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가스를 원료로 하는 발전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규모 이하의 사업
-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 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사업
-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사업
-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의제를 받은 자

- 4.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 5.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7. "배전망"란 배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8. "송전망"란 송전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설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11. "분산에너지편익"이란 분산에너지로 발생하는 대규모 발전시설·송 전망 설치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 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 년 단위의 분산에너지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3.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한 지역별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
 -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 6. 분산에너지 생산 · 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11. 분산편익 산정 및 보상 등 분산에너지 편익 증대 기여 사업자 지원 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 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 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 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1.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

- 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의 요건,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력시장거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

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 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다.
-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등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3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경우
 - 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밖에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4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인가·결정·지정·승인·협의·심의·신고 등을 하기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자
 - 나.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자
 -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자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자
 -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자
 -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 단의료복합단지 사업자
 -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 신도시 운영자
 -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관리자
 -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관리자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

- 및 설치의무지역은 지역별·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 4. 이 법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의무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의 산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내역을 검토하여 그 결과가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이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의무설치자에게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 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제5항에 따라 조정·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 치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조정·보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분산에너지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 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위하여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배전망 관리·감독

- 제17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관리의무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 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 다.
 -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

- 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4. 전력거래소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유지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에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 예측, 감시, 평가 및 제어 등을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배전사업자

- 가 제19조에 따라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 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①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조치)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 을 제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출력제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배전망 증설·운영계획의 제출 등) 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 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배

전계통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공무원 및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22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이 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 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전망운영 감독 업무의 수행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제23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의 배전사업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전사업자의 검사·감독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한다.
 -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감독
 -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감독
 -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감독
 -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감독
 -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감독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배전망 운영 관련 사업에 관한 감독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ㆍ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며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 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2.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

-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 다.
- 제27조(이의신청)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6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전력계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6조제 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 업계획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

- 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 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 항등에 관련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제27 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계통영향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 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 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3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4조(사후관리)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5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 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관할

- 시·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도지사가 분산에너 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 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 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

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①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지역별 차등 요금 등

- 제48조(지역별 차등 요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에 대하여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 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지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보상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전성·효율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 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 2. 분산에너지사업의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제52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재교육을 통한 인력의 양성
 -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4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제55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 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 구개발
 -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7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

- 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워부렁으로 정한다.
- 제5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 4. 분산에너지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사업
 - 5.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관리
 - 6.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 7.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 8.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 9. 분산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 11.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 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 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 제60조(보험가입) 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열량을 속이는 등 부당하게 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중단·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4.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6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 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관련 기관·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

- 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 3. 제58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 제65조(수수료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66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 너지사업을 한 자
 -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 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 3. 제61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 4. 제6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